

#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	1995.	3.
개정	1998.	9.
개정	2002.	3.
개정	2009.	1.
개정	2013.	1.
개정	2015.	1.
개정	2016.	2.
개정	2018.	10.
개정	2019.	8.
개정	2020.	9.
개정	2024.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우송학원 정관 제48조에 의거 우송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및 직무)** ①위원회는 부총장, 전략기획처장, 교무처장을 포함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3.1.) (개정 2009.1.1.) (개정 2009.1.1.) (개정2013.1.1.) (개정2015.1.12.)(개정2016.2.1.)(개정2018.10.08.)(개정2020.09.10.)(개정2024.0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 (개정2013.1.1.)(개정2015.1.12.)(개정2016.2.1.)(개정2024.01.18.)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 (개정2013.1.1.)(개정2018.10.08.)(개정2020.09.10.)

**제3조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및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와,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9.8.21.)
2. 총장이 부총장 등의 주요 보직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써의 품위 유지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관계자의 회의참석)**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9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